***고성 STX조선해양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고성군 동해면에 위치한 고성STX조선해양에서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자행하고 있는 만행을 고발합니다.

1. 고발내용

 현재 고성STX조선해양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불법적인 급여공제를 일삼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근무복의 급여공제.

 계절별 지급되는 근무복을 지급일로 부터 3개월이 되지 않아서 퇴사하면 지급 임금에서 전액

 공제함.

예) 2012년 9월에 입사하여 춘추복을 지급받아 10개월 근무 후 2013년 7월에 하복을 지급

 받고 2개월 후인 2013년 9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7월에 지급받은 하복 값을 9월의 임금

 에서 전액 공제하고 있다...

2) 각종 보호 소모품 급여공제.

 용접사 보호자켓,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작업에 필요한 보호 소모품 또한 지급일로부터 3개

 월이 되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지급 임금에서 전액 공제하고 있다..

 예) 2012년 9월에 입사를 하였으나 입사 당시 안전화 재고가 없어 지급받지 못하고 2개월 후

 인 2012년 11월에 지급받게 되었다. 6개월 후 안전화 재 지급규정에 맞추어 2013년 5월에

 안전화를 재 지급받고 근무하다 2개월 후인 2013년 7월에 퇴사하게 되면 안전화 값을 8

 월의 임금에서 전액 공제하고 있다..

3) 출입증 발급비용 급여공제.

 입사시 발급되는 출입증의 발급 비용 중 목걸이값 명목으로 1만원을 급여공제 하고, 퇴사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있다..

4) 사내 자격증 발급비용 급여공제.

 사내 자격시험 합격 후 발급되는 자격증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자

 격증 스티커의 최초발급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격

 증 스티커가 낡아서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낡아서 재발급을 받게 되면 그 비용

 (1만원)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5) 식대(중식)의 임금공제

①사내규정으로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은 12:00분부터 이다. 그러나 막상 점심식사를 할 수 있

 는 시간은 5분 후인 12:05분부터 하도록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길시 식사비(1끼니당 3천원)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②식사비용 처리는 출입증 타각기에 찍힌 수량으로 처리 하는데, 사내식당의 타각기 오류로 인

 해 2중으로 찍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오류로 2중 타각된 식사비용 까지도 근로자

 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다. 한 달에 9회가 오류로 2중 타각 되어 54,000원의 점심식사

 비용을 공제 당한 근로자도 있다. 근로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했으나 타각기 오류는 인정해도 공제된 금액은 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7) 사내 자격시험에 사용되는 시험용 시편 비용을 임금공제.

 고성STX조선해양의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를 하게 되면 용접 기능시험을 치뤄서 자격취득

 을 하여야만 일을 할 수가 있다. 시험의 기회는 6회가 주어지는데 2회 내에 합격하면 시험

 시편비용(1EA당 5만원)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나 2회 까지도 불합격 하여 3회차 부터의 시험

 시편비용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한 시험응시 신청을 하였으나 사정(결근 등)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시험을 치루

 지 않아 시험시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응시를 이유로 시험 시편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

 서 공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

으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공제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즉 위 사항들은

당연히 근로 기준법 위반 일 것이다. 위의 사항들을 고성STX조선해양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

로 임금공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청업체에 결재될 기성에서 공제를 시킨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물량팀의 기성에서 공제하고, 물량팀장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성

STX조선해양이 하청업체와 물량팀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갈취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하

청업체나 물량팀에 전가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을 자행하는 근원인 고성STX조선해양이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는 없을것이다.

 따라서 고성STX조선해양의 위와 같은 근로자의 임금 갈취 행위을 고발 하고자 한다.